

대구고등법원 2024. 7. 9 선고 2023나145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4. 7. 9 선고 2023나145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2052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박한결, 임성우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양현국, 김석균

변론종결 2024. 5. 28.

판결선고 2024. 7. 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2052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19.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640,137,7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0,137,7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제3행의 각 “Z”을 각 “B”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하단의 표를 제외하고 아래에서 제6행의 “제기하였다.”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하단의 표를 제외하고 아래에서 제5행의 "2019. 8."을 "2021. 9.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상단의 표 안의 제1행 "J호"를 "J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 2행의 "N 대 62㎡ 중 1/6 지분"을 "N 대 69㎡, AA 전 170㎡"로, 같은 면 제2, 3행의 "이하 위 각 창녕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B이 소유한 지분"을 "이하 B 소유의 위 각 창녕군 소재 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각주 제외하고 아래에서 제7행의 "약 601,324,554원"을 "약 610,315,554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각주 제1행의 "Q 중앙회 170,169,369원"을 "Q 중앙회 179,160,36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7행의 "제출하였다고"를 "지급하였다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B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자신의 단독 소유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장에서 'B은 피고에게 부산 동래구 AB AC호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피고는 B에게 위 AB J호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각 양도하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와 B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위 아파트 분양권, B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이 60% 이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7, 6행의 "위와 같이 피고가 B의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한 43,4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해행위로 본다."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B의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한 43,4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4행의 "체결된"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1/2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고와 B 사이의 일련의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피고가 구하는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피고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만을 제출하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21. 10. 12. 피고의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1차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후 2021. 11. 2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화해권고 요청안을 제시하자, 위 법원은 2022. 1. 19. 피고의 새로운 화해권고 요청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2차 화해권고결정을 한 점, ③ B은 위와 같은 2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후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④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 외에 피고와 B의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도로 피고와 B의 재산내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B와 동일한 주소지인 '경남 창원군 AD'에 거주하였고, B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정보를 위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 사이의 재산분할은 순수한 소송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일련의 합의에 따른 실체법상 재산분할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분할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증식한 반면 B은 경제관념이 부족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부동산 투자로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B은 피고와 1985. 5. 13. 혼인할 당시부터 2013. 2.경까지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3. 1. 31.경 퇴직금으로 175,249,472원을 수령하는 등 재직 기간 동안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별도의 고정적인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도 자신의 소득활동이나 수입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혼인 기간 동안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를 통한 차익은 모두 B과의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부동산 취득자금을 B의 소득이 아닌 피고의 별도 소득 등으로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이혼소송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제외하면 B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5억 원 이상의 채무 및 다수의 가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약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고가 실질적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 관련 B의 영농조합법인 G에 대한 4,341만 원의 채무만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다른 모든 채무에 대하여는 B이 그대로 부담하기로 정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시가 11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아무런 피담보채무 없이 모두 보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서 피고가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4,34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이성욱, 판사 주우현

별지